

「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)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개발 자금 지원
- 3) 멘토링 및 교육지원, 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
- 4)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·변경·해약
- 5)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·관리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1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,2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    | 인건비 | 간접비 | 사업비 | 비고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1,200 | 240 | 120 | 840 |    |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 :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## 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##### 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기업 발굴·선정·컨설팅·상담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관련 지식 및 이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관련 부서에서는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가 미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제출될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성과평가 및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의안에 포함하는 등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